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김연학
	담당부서 (과)	벤처투자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이은청		연락처	044-204-7711
	과장	이준희		이메일	kimyh6887@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5.30~2023.0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 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7.규제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 해야 하는 결성계획서 주요 내용을 명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체화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 규제자</td><td>민간재 간접벤처 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td><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민간재 간접벤처 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민간재 간접벤처 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								
9.규제목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기준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63조의2제1항-----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영 제3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 ----- ----- ----- -----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신설>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생략)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⑤ -----
-- 제3항(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제4항)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법 제63조의2제3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u>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u> ⑧ ----- 제7항----- ----- ----- ----- -----.
---	---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법제화 추진 발표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 22. 11.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기재부, ' 22. 11. 4.)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 주요 내용을 명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 사항을 조합 규약,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체화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명시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결성계획서의 주요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을 종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규정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간담회 (협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증권사 등)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5.11)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기준을 구체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요건의 세부사항을 종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여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등록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로 보기 어려워 일몰설정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종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기준으로 등록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